

영등포구의회
제21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 의원 발의】



2019. 3. 2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87호로 2019년 3월 14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(안 제2조)
- 나.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 등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아르바이트 수요조사, 신청 및 선발 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대학생아르바이트의 보상기준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『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』,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』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 기예산 반영 - 180,784천원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, 구 본청 및 소속기관, 동주민센터, 구의회 등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- 안 제1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대상, 운영시기, 근무기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아르바이트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임금,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검토결과, 그 동안 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해 왔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, 운영시기, 신청 및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공개성과 신뢰성, 지속성을 제고하는 한편, 대학생들에게 직업선택 전에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, 본인 전공과 적성, 관심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청년고용촉진특별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 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0. 9.]

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)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 고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 · 통신대학 ·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